



2009년 1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지방기업종합지원팀장 박인규(2110-4753), 사무관 김봉석(2110-4747)

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대폭 지원 시행

- 이전 건당 60억원 · 토지 등의 가액의 70%까지,
국비지원비율도 70%까지 상향 지원-

-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(지식경제부고시)」을 '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
- '04년부터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의해 수도권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입지, 투자,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 왔음
- 이번에 변경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첫째,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(분양·임대)한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종전에는 토지 등의 가액의 50%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의 일반지역·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%까지, 신발전지역(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,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)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80%까지 지원을 확대함
 -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종전에는 국비: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5:5에서 7:3으로, 낙후지역은 종전 8:2에서 9:1로, 신발전지역(신규도입)은 9: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

- 둘째, 지방이전기업의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: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5:5에서 7:3으로, 낙후지역은 8:2에서 9:1로, 신발전지역은 9: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
- 셋째,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종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
 - 국비:지방비의 비율도 일반지역은 5:5에서 7:3으로, 낙후지역은 8:2에서 9:1로, 신발전지역은 9: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
- 넷째,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종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
 - 국비:지방비의 비율도 고용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지역의 경우 5:5에서 7:3으로, 낙후지역은 8:2에서 9:1로, 신발전지역은 9: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
- 다섯째,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종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,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하여 대규모로 이전(기업군 이전) 투자할 경우 등에는 70억원까지 확대함
 - 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, 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를 60억원까지 지원함

- 또한,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를 매입(분양임대)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천억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나
-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를 매입(분양임대)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천억원 이상 투자하여 낙후지역, 신발전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추가하여 70억원 까지 지원함
- 이 외에 수도권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이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업의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이전기업이 사업 개시 전에 교육훈련을 위해 미리 채용한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산정 인원에 포함하여 지원함
-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기업 지원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함
- 아울러 '09년 기업지방이전 지원예산은 '08년 434.5억원의 2배인 870억원인 바 향후에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지방이전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라 되기를 기대함

<붙임>

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(요약)

구분	개정내용
입지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범위 : 일반·낙후지역(토지비용의 50%→70%), 신발전지역(토지비용의 80%) ○ 지원비율(국비:지방비) : 일반지역(5:5→7:3), 낙후지역(8:2→9:1), 신발전지역(9:1)
투자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범위 : 변동 없음(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) ○ 지원비율(국비:지방비) : 일반(5:5→7:3)·낙후지역(8:2→9:1), 신발전지역(9:1)
고용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범위 : 신규고용 20인 초과시 6월 범위(1인당 50만원→60만원) - 사업개시 전에 교육훈련을 위해 미리 채용한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도 산정인원에 포함 ○ 지원비율(국비:지방비) : 일반지역(5:5→7:3), 낙후지역(8:2→9:1), 신발전지역(9:1)
교육훈련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범위 : 신규고용 20인 초과인원 교육훈련시 6월 범위(1인당 50만원→60만원) - 사업개시 전에 교육훈련을 위해 미리 채용한 경우 건축허가일 이후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도 산정인원에 포함 ○ 지원비율(국비:지방비) : 일반지역(5:5→7:3), 낙후지역(8:2→9:1), 신발전지역(9:1)
지원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전 건당 50억원→60억원으로 상향 ○ 대규모 이전투자시 건당 70억원까지 지원 -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를 매입(분양임대)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천억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 - 낙후지역, 신발전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를 매입(분양임대)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천억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완료하는 경우
지원비율 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금의 지역편중 해소를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의 100분의 20(중전:100분의 10) 미만인 지자체에 국비지원비율 5%P(중전:10%P) 추가